#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12

발의연월일: 2021. 8. 30.

발 의 자:김성환·강득구·강훈식

김남국・김성주・김정호

민형배 · 신영대 · 신정훈

안호영 · 앙이원영 · 위성곤

윤건영 • 윤준병 • 이소영

이용빈 • 이워택 • 이해식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

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·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

## 주요내용
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비율 조정(안 제8조제1항제1호)

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80으로 조정함.

#### 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안 (대안)」(의안번호 제122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- 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##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제1호 중 "730"을 "68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	제8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
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	
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	
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	
에 전입하여야 한다.	<b>.</b>
1. 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」	1
에 따른 교통・에너지・환경	
세의 1천분의 <u>730</u> 에 해당하는	<u>680</u>
금액(이하 "교통·에너지·환	
경세전입액"이라 한다)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